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789호 2021. 2. 3.(수)</p>	
---	--	---

선 결	기관 의 장
--------	--------

고 시

제2021-28호 거창군 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3
제2021-29호 도로명주소 고시	6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1-189호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8
거창군 공고 제2021-192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결정(변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공람공고	14
거창군 공고 제2021-195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15
거창군 공고 제2021-196호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27
거창군 공고 제2021-1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39
거창군 공고 제2021-198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188호선, 소로3-110호선, 소로3-111호선) 실시 계획 인 가 를 위 한 열 램 공 고	40
거창군 공고 제2021-201호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	44
거창군 공고 제2021-213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56

거창군 공고 제2021-216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공람·공고 57

거창군 공고 제2021-224호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안) 58

거창군 공고 제2021-229호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3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1-28호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창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04일

거창군수

1.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경미한 사항)

가. 체육시설(변경)

1) 골프장(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체육시설	골프장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1,814,016	증)3,618.5	1,817,634.5	경상남도 고시 제2007-92호 (2007.03.29)	

■ 골프장 변경사유서

도면표기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변경 - 1,814,016m²→1,817,634.5m² [증) 3,618.5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축척변경 및 좌표면적 환산에 따른 면적 정정 반영

2. 거창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일명:감악산골프장)

다. 사업규모(변경)

- 당 초 : 1,814,016㎡
- 변 경 : 1,817,634.5㎡ (증 3,618.5㎡)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합 계	1,814,016	증) 3,618.5	1,817,634.5	100.0	100.0	
	체육시설 용지	334,067	감) 634	333,433	18.4	18.3	
	건축시설 용지	9,165		9,165	0.5	0.5	
	공공시설 용지	93,929	증) 389	94,318	5.2	5.2	
	녹지 용지	1,376,855	증) 3,863.5	1,380,718.5	75.9	76.0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 성 명 : 코리아신탁(주) 대표이사 백인균

마.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08. 03. 13. ~ 2020. 12. 31.
- 변 경 : 2008. 03. 13. ~ 2021.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3.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13필지		1,814,016	1,817,634.5	1,814,016	1,817,634.5					
1	신원면 덕산리	231	답	255	253.8	255	253.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	신원면 덕산리	255	임	205	205.7	205	205.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3	신원면 덕산리	256	임	89	89.3	89	8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4	신원면 덕산리	257	임	89	88.5	89	88.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5	신원면 덕산리	374	답	2,172	2,135.8	2,172	2,135.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6	신원면 덕산리	377	임	89	86.8	89	86.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7	신원면 덕산리	378	답	873	880.6	873	880.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8	신원면 덕산리	379	답	231	229.4	231	22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9	신원면 덕산리	380	답	423	412.1	423	41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0	신원면 덕산리	391	답	833	836.3	833	836.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1	신원면 덕산리	440	임	1,236	1,222	1,236	1,2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2	신원면 덕산리	산13	임	1,805,339	1,808,892.2	1,805,339	1,808,89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3	신원면 덕산리	산59	임	2,182	2,302	2,182	2,3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3.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221-8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1518-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221-8	20210203	20090702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면) 활용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1478-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새작길 124-1	20210203	20091228	새작골이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56-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어인길 975-93	20210203	20090401	어인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8-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119	20210203	20090401	자연마을인 죽전마을을 통과하여 분기 되는 네번째 도로임을 반영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78-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7길 108	20210203	201604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부여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을 지정하였으나, 개정 조례는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나. 주택용 소방시설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 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 확대(안 제5조)
- 라.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6조)
- 마. 지원신청, 지원결정을 정함(안 제7조·제8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1. 1. 29. ~ 2021. 2. 18.(20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2. 18.(목)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우) 50132

○ 전 화 : 055)940-3632, FAX : 055)940-8912

(4)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제 각 호의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6조(지원 범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교체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 받으려면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①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결정(변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공람공고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88-2번지 일원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결정(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공고 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1. 29.

거 창 군 수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주요내용

- 위 치 :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88-2번지 일원
- 목 적 :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결정(변경)
- 해 제 면 적 : 2,409㎡ (농업진흥구역 2,409㎡)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 가. 용도지역 변경 : 2,409㎡
 -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나.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 : 2,668㎡
- 해 제 사 유 : 북상면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순환버스 환승주차장을 결정함에 따라 시설의 용도 및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함
 - ※ 해당 공람공고는 해제(안)으로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제척될 수 있으며, 확정된 계획이 아님

2.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및 관련도면 : 게재생략

3. 관련도서 공람 및 의견 제출장소 : 거창군 도시건축과(☎055-880-2234)

4.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1. 2. 1.

거 창 군 수

1. 위탁기간 : 3년(2021. 3. 23. ~ 2024. 3. 22.)

2. 수탁료 : 무료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이전 경상남도 내 근거를 두고 등록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적이 있거나 안전점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재무상태가 건전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전담인력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자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바. 기타 공공성, 책임능력, 공신력 등이 보장될 수 있는 우수한 기관

4. 신청서 접수방법

가. 공 고: 2021. 2. 1. ~ 2021. 2. 10.

나. 접수일: 2021. 2. 4. ~ 2021. 2. 10.

다. 접수장소: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도시계획담당, ☎ 055-940-3582)

라. 접수방법

- 1) 직접 방문 접수(근무시간 09:00~18:00) 또는 우편 접수
- 2)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근무종료시간(18:00)까지 도달분에 한함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5. 제출서류

가.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1부.(「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포함)

나. 사업계획서 1부(자유 서식)

(※ 지역내 옥외광고업 종사자와의 유대 강화 방안 포함 작성)

다.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자료

마.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바. 사업신청자 현황 1부.

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아. 조직 및 운영인력 현황, 재정상태 각 1부.

자. 기타(평가 항목 증빙자료)

6. 위탁운영자 결정

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평가

1) 일 시 : 2021. 2.25.(목) 14:00

2) 장 소 : 거창군청 중회의실(지하1층)

나. 심사기준 : 서면평가 및 심사평가 (※ 배점 및 세부평가표 : 붙임 참조)

다. 심사평가 방법

- 1) 심사위원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로 결정
- 2)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수탁자 결정

- 1) 서면 평가점수와 심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결정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심사평가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결정
- 2) 단독 신청시 재공고하고, 재공고시에도 단독 신청한 경우, 단독 신청한 1개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심사를 실시하되, 종합 평점 70점 이상을 얻어야 수탁자로 결정함.

마. 수탁자 발표 : 심의위원회 결정 즉시 발표 및 문서로 통보

7.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가. 「국가기술훈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 1인 이상 포함)

나. 사무실

다.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누전테스트기의 장비를 갖춘 자

8. 수탁자의 임무 및 준수사항

가. 안전점검원 지정 및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실시

나. 안전점검 내용의 기록관리

다. 안전점검에 합격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검사결과 제출

라. 안전점검 업무수행 시 불법광고물의 즉시 보고 및 시정조치

마. 안전점검원 지정 및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책임 실시

⇒ 검사항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바. 안전점검 내용의 기록관리

사. 안전점검에 합격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증명서 교부 및 검사내역 통보

아. 안전점검 업무수행시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에 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

9. 기타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제출서류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나. 수탁자로 결정되어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무효로 처리합니다.
- 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규, 신청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고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 제출된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되며, 서류 미참부로 인해 받은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마.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수탁자로 정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 바. 본 공고와 관련하여 심사내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사.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에 대한 해석은 거창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1. 배점 및 심사기준 1부.

- 2.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1부.(구비서류 포함)
- 3. 사업신청자 현황 1부.
- 4. 옥외광고사업 안전점검 수행실적 1부.
- 5. 조직 및 운영인력 현황 1부.
- 6. 재정상태 1부.
- 7. 서약서 1부.
-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탁자 선정 심사배점표

평가 분야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				등급 심사기준	배 점
		A	B	C	D		
총 계							
서면 평가 (60점)	운영실적 (10점)	10	8	6	4	○ 최근 3년간 관련 위탁 운영실적 (2015년~2017년) ㉠ 3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인력확보 (20점)	20	15	10	5	○ 점검 인력 보유 여부(자격증 소지자) ㉠ 옥외광고, 건축, 전기 각 2명 이상 ㉡ 옥외광고, 건축 각 2명 이상, 전기 1명 이상 ㉢ 옥외광고 2명 이상, 건축 및 전기 각 1명 이상 ㉣ 옥외광고, 건축, 전기 각 1명	
	시설 및 장비 확보 (20점)	20	15	10	5	○ 검사 시설 및 장비 확보 여부 ㉠ 사무실, 작업차량 2, 크레인 1, 사다리 2, 절연저항계 1, 카메라 1, 망원경 1 이상 ㉡ 사무실, 작업차량 2, 사다리 2, 절연저항계 1, 카메라 1, 망원경 1 이상 ㉢ 사무실, 작업차량 2, 사다리 1, 절연저항계 1, 카메라 1, 망원경 1 이상 ㉣ 사무실, 작업차량 1, 사다리 1, 절연저항계 1, 카메라 1	
	재정부담 능력(5점)	5	4	3	2	○ 소유자산 ㉠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신인도 (5점)	5	3	2	1	○ 행정처분 받은 사실 여부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 최근 2년 이내 3개월 미만의 행정처분 ㉣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심사 평가 (40점)	안전점검 수행 계획 (30점)	30	20	10	5	○ 안전점검 수행 계획의 적정성, 안전성, 신속성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제안 (10점)	10	8	6	4	○ 효과적인 안전점검을 위한 제안(참신성, 독창성)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붙임2]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붙임3]

사업신청자 현황

상 호		대 표 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본	사	
업 태		사 업 장		
종 목				
주요제품		설 립 일 자		
납입자본금	백만원	결 산 일		
총 자산	억원	주 거 래 은 행		
매출액	억원	종 업 원 수		명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간			
	사유			
<p style="margin-top: 0;">법인 연혁</p>				

- (주) 1.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법인연혁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함
 4.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붙임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행 실적

(단위:천원)

발 주 처 (운영기관)	수행 기간	안전점검 건수	비 고

(주)

1. 최근 3년간(2018. 1. 1. ~ 2020. 12. 31.) 수행한 안전점검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은 발주처와 계약한 위수탁 협약서 사본 제출

[붙임5]

조직 및 운영인력, 사무실 등 현황

1. 조직 구성(안)

“조직구성도 ”

2. 인력현황

○ 총 인 원 : 명

- 점검인력 : 명

- 지원인력 : 명

○ 점검 인력

연번	성 명	담당업무	자격증	주요경력	비 고

주)

1. 보유자격 및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고 사본을 첨부한다.

○ 지원인력

연번	성 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주)

1. 보유자격 및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고 사본을 첨부한다.

3. 사무실 보유 현황

○ 주소, 위치, 면적 등

4. 검사 시설, 장비 현황 : 시설, 장비 목록 작성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

[붙임6]

재 정 상 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직전) 회계년도	비 고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총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1. 세무서 발행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공인회계사, 세무서의 확인을 필한 재무제표 첨부
(최근 회계연도 세무서 발행 표준 재무제표서 제출)

[붙임7]

서 약 서

소 속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수탁 응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거창군에서 공고한 내용과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에서 제출한 서류는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발탁 등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당사는 거창군에서 정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거창군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2. 1.

거 창 군 수

1. 위탁기간 : 3년(2021. 3. 23. ~ 2024. 3. 22.)

2. 수탁료 : 무료

3. 신청자격

- 가. 공고일 이전 경상남도 내 근거를 두고 등록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 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경험이 있거나 교육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재무상태가 건전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라. 운영 가능한 전담인력 및 우수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마. 기타 공공성, 책임능력, 공신력 등이 보장될 수 있는 우수한 기관

4. 신청서 접수방법

가. 공 고: 2021. 2. 1. ~ 2021. 2. 10.

나. 접 수 일: 2021. 2. 4. ~ 2021. 2. 10.

다. 접수장소: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도시계획담당, ☎ 055-940-3582)

- 1) 직접 방문 접수(근무시간 09:00~18:00) 또는 우편 접수
- 2)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근무종료시간(18:00)까지 도달분에 한함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5. 제출서류

- 가. 위탁교육 지정신청서 1부.(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각 1부 포함)
- 나. 교육계획서(사업계획서) 1부(자유 서식)
(※ 지역 내 옥외광고업 종사자와의 유대 강화 방안 포함 작성)
- 다.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라. 위탁교육 수행실적 증빙자료
- 마.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바. 사업신청자 현황 1부.
- 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아. 조직 및 운영인력 현황, 재정상태 각 1부.
- 자. 기타(교육 교재 등 평가 항목 증빙자료)

6. 위탁운영자 결정

- 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평가
 - 1) 일 시 : 2021. 2. 25.(목) 14:00
 - 2) 장 소 : 거창군청 중회의실(지하1층)
- 나. 심사기준 : 서면평가 및 심사평가 (※ 배점 및 세부평가표 : 붙임 참조)
- 다. 심사평가 방법
 - 1) 심사위원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로 결정
 - 2)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라. 수탁자 결정
 - 1) 서면 평가점수와 심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결정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심사평가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결정
 - 2) 단독 신청시 재공고하고, 재공고시에도 단독 신청한 경우, 단독 신청한 1개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심사를 실시하되, 종합 평점

70점 이상을 얻어야 수탁자로 결정함.

마. 수탁자 발표 : 심의위원회 결정 즉시 발표 및 문서로 통보

7. 수탁자의 임무 및 준수사항

- 가. 수탁자는 위탁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연도 교육계획은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수탁자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교육실시 후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교육 종료 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제5항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이수대장을 기록하여 교육 종료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수탁자는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에 불참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 종료 후 15일 이내 교육 불참자 명단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바. 공고문 이외의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한다.

8. 기타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제출서류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나. 수탁자로 결정되어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무효로 처리합니다.
- 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규, 신청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고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 제출된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되며, 서류 미첨부로 인해 받은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마.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수탁자로 정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바. 본 공고와 관련하여 심사내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에 대한 해석은 거창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1. 배점 및 심사기준 1부.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1부.(구비서류 포함)

3. 사업신청자 현황 1부.

4.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위탁 교육 실적 1부.

5. 조직 및 운영인력 현황 1부.

6. 재정상태 1부.

7. 서약서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수탁자 선정 심사배점표

평가 분야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				등급 심사기준	배 점
		A	B	C	D		
총 계							
서면 평가 (60점)	운영실적 (15점)	15	10	7	3	○ 최근 3년간 위탁 운영실적(2015년~2017년) ① 3년 이상 ② 2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1년 미만	
	강사 확보 (15점)	15	10	7	3	○ 강사 보유 현황 ① 강사 4명 이상 ② 강사 3명 ③ 강사 2명 ④ 강사 1명 이하	
	강의실 확보 (15점)	15	10	7	3	○ 강의실 보유 여부(임대 포함 / 면적) ① 150㎡ 이상 ② 120㎡ 이상 150㎡ 미만 ③ 100㎡ 이상 120㎡ 미만 ④ 100㎡ 미만	
	교육 기자재, 장비 확보 (5점)	5			2	○ 교육 관련 기자재, 장비 보유 여부(수량 등) ① 빔프로젝트 1개 이상, 교육교재 있음 ② 빔프로젝트 1개, 교육교재 없음	
	재정부담능력 (5점)	5	4	3	2	○ 소유자산 ① 3억원 이상 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③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④ 1억원 미만	
	신인도 (5점)	5	3	2	1	○ 행정처분 받은 사실 여부 ①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② 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③ 최근 2년 이내 3개월 미만의 행정처분 ④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심사 평가 (40점)	교육 계획 (30점)	15	10	7	3	○ 교육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① 우수 ② 양호 ③ 보통 ④ 미흡	
		15	10	7	3	○ 교육 내용의 독창성, 교재의 충실성 ① 우수 ② 양호 ③ 보통 ④ 미흡	
	기타 (10점)	10	8	6	4	○ 지역내 옥외광고업 종사자와의 유대 강화 방안 ① 우수 ② 양호 ③ 보통 ④ 미흡	

[붙임3]

사업신청자 현황

상 호		대 표 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본	사	
업 태		사 업 장		
종 목				
주요제품		설 립 일 자		
납입자본금	백만원	결 산 일		
총 자산	억원	주 거 래 은 행		
매출액	억원	종 업 원 수		명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간			
	사유			
<p style="margin-top: 0;">법인 연혁</p>				

- (주)1.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법인연혁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함
 4.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붙임4]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위탁 교육 실적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참여자 수, 강사 수, 장소, 커리큘럼 등 자세히)	발 주 처 (운영기관)	비 고

(주)

1. 최근 3년간(2018. 1. 1. ~ 2020. 12. 31.) 참여사업 등 주요사업(운영)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은 발주처와 계약한 위수탁 협약서 사본 제출

[붙임5]

조직 및 운영인력 현황

1. 조직 구성(안)

“조직구성도 ”

2. 인력현황

○ 총 인 원 : 명

- 강사인력 : 명

- 관리인력 : 명

○ 강사인력

연번	성 명	담당업무	자격증	주요경력	비 고
					주요강의 과목

주)

1. 해당 강사의 이력서를 첨부한다.
2. 보유자격 및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고 사본을 첨부한다.

○ 관리인력

연번	성 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주)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첨부한다.
2. 보유자격 및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고 사본을 첨부한다.(해당시)

3. 인력수급계획 등

[붙임6]

재 정 상 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직전) 회계년도	비 고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총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1. 세무서 발행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공인회계사, 세무서의 확인을 필한 재무제표 첨부
(최근 회계연도 세무서 발행 표준 재무제표서 제출)

[붙임7]

서 약 서

소 속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수탁 응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거창군에서 공고한 내용과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에서 제출한 서류는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발탁 등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당사는 거창군에서 정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거창군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수탁자 모집 공모 신청 및 적격자 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위탁에 적합한 위탁관리자(수탁자) 선정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탁관리자(수탁자) 선정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위탁운영 관리자 모집 공고 및 적격 수탁자 선정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모 신청자의 적격 및 자격의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탁관리자(수탁자) 선정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건설기계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1. 2. 1. ~ 2021. 2. 20.
3. 공고대상 : 61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1년 2월 1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21 - 198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88호선, 소로3-110호선, 소로3-111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88호선, 소로3-110호선, 소로3-111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아래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제23조

2021. 2. 1.

거창군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초결정일	비고
		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188호선)	가조	수월	소로	2	188	142.0	6.0	3,198	가조면 수월리 1370-24 ~ 가조면 수월리 478	경고-115 (79.5.24)
	도시계획도로 (소로3-110호선)	가조	수월	소로	3	110	142.0	8.0			
	도시계획도로 (소로3-111호선)	가조	수월	소로	3	111	182.0	6.0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2-188호선, 소로 3-110호선, 소로 3-11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소계	-	-	-	18,681	2,304					
1	가조면 수월리	488-4	도	1,203	9		거창군			
2	"	488-9	전	8	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3	"	488-7	전	176	17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4	"	488-3	도	99	33		거창군			
5	"	458-19	채	111	111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 3길 7	박진혁			
6	"	457-13	전	150	150		거창군			
7	"	456-17	대	53	53		거창군			
8	"	1376	도	11,405	88		국(교통부)			
9	"	458-14	전	382	316	서울 마포구 아현동 372-53	김경순			
10	"	457-9	전	26	26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22-1	김재목			
11	"	457-15	전	174	17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17,201호	백종섭			
12	"	457-8	도	153	61		경상남도			
13	"	457-2	도	1,607	7		거창군			
14	"	458-16	전	661	110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우례리 1955	이일선			
15	"	458-9	도	51	31		경상남도			
16	"	458-17	전	74	74	서울 마포구 아현동 372-53	김경순			
17	"	460-8	과	159	159	서울 마포구 아현동 372-53	김경순			
18	"	461-2	과	67	67		거창군			
19	"	486-5	전	146	146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1229	이수영			
20	"	481-10	과	283	283		거창군			
21	"	478-6	답	204	204	경남 거창읍 중앙리346-7	최순탁			
22	"	464-6	도	1,422	6		거창군			
23	"	1730-24	채	67	12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소계	-	-	-	13,300	894					
24	가조면 수월리	1370-23	천	70	40		국 (국토교통부)			
25	"	466-5	천	35	35		이만조			
26	"	466-7	임	38	38		거창군			
27	"	470-4	답	27	27		거창군			
28	"	468-2	대	84	84		거창군			
29	"	469-1	전	38	38		거창군			
30	"	1376	도	11,405	92		국 (국토교통부)			
31	"	562-3	도	44	1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410호	김재영			
32	"	562-2	대	518	2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410호	김재영			
33	"	561-6	전	108	108		거창군			
34	"	561-9	도	18	18		거창군			
35	"	561-5	대	169	7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561-1	김순복			
36	"	561-8	도	39	7	527	박만준			
37	"	560-1	도	5	5		거창군			
38	"	560-2	대	100	100		거창군			
39	"	557-1	대	9	9		거창군			
40	"	556-6	대	86	86		거창군			
41	"	556-3	도	8	8	경남 거창군 가조면 월포2길 85-8	정순호			
42	"	556-2	도	6	5	경남 거창군 가조면 월포2길 99-4	박임숙			
43	"	556-4	대	34	34		거창군			
44	"	526-11	도	146	12		거창군			
45	"	526-9	임	313	101		거창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등 아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면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전 화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055-940-3595)
 - 기 타 : FAX(055-940-3579), E-mail(oodles1217@korea.kr)

의 건 서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조기철거 및 비용지원을 통해 군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21. 2. 3. ~ 2021. 3. 3. (29일간)
3.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5. 사업물량

구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물량	350동	30동	40동

6. 지원기준

○ 지원 분야별 기준

- 주택 철거·처리 : 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을 포함
- 비주택 철거·처리 : 주택부지 외의 건축용도가 창고·축사인 건축물
- 주택 지붕개량 : 주택부지 내의 본체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물은 개량지원 가능하며, 비주택은 개량지원 불가

○ 미등재(무허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지붕개량 지원 가능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 가능성 등이 예상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보관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운반·처리비 지원 불가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가 해체·철거된 경우(증빙자료 지자체에 제출) 운반·처리

비 지원 가능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등재 또는 미등재)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棟)으로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 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7. 지원금액

구 분	주택부지 내(부속건물 포함)		주택부지 외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면적 200㎡ 이하인 축사·창고 철거·처리
우선지원 가구	1동당 전액 지원	1동당 10,000천원 한도내 지원	· 건축용도가 축사·창고인 건축물로 1동당 200㎡ 이하 전액 지원
일반가구	1동당 3,440천원 한도내 지원	1동당 3,000천원 한도내 지원	

※ 초과분은 자부담

8. 대상자 선정 기준

구 분		우 선 순 위
주택 철거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일반가구(작은 규모 우선 지원)
지붕 개량	우선지원가구 (20동)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일반가구 (10동)	작은 규모 우선 지원
비주택 철거		작은 규모 우선 지원

9. 신청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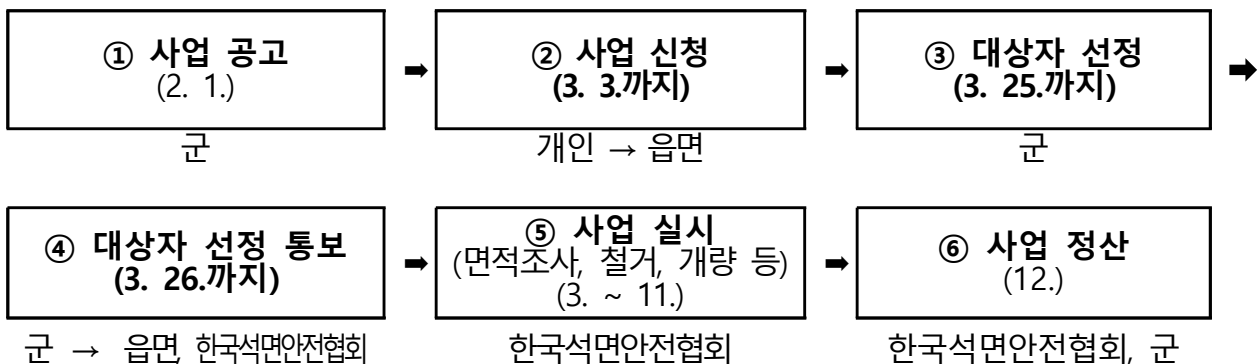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이행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실확인서(미등재(무허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1부.
- 사실확인서(건축주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해당) 1부.

- 소유권확인 가능 서류(사실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해당하며, 건축물 대장, 과세대장 등) 1부
- 우선지원가구 증빙 서류(우선지원가구인 경우 해당, 수급자 증명서 등)

10. 사업추진방법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은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공사업체에 지급
- 개인이 공사업체 선정 불가
- 슬레이트와 무관한 건축 폐기물 처리비용은 신청자 자부담 처리
- 신청자 본인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하였을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착공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11. 추진절차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있을 수 있음)

12. 기타

-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가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 초과 시 초과분 자부담
- 임의 처리 및 개량 후 신청 불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 선정 배제
- 동일인이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
- 관련서류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 다만 불가피하게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021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문의 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055-940-3493) 및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

- 붙임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이행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사실확인서(미등재(무허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1부.
5. 사실확인서(건축주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1부.
6. 포기서 1부.
7. 참고자료(기준중위소득표) 1부. 끝.

[붙임1 서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m ²)	
	건축연면적 (m ²)	계	주건물	부속건물()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p>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주 :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p>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붙임1 서식의 첨부]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붙임2 서식]

사업이행 동의서

사업명 : 2021년 거창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연계사업명:)

성명 :

주소 :

연락처 :

위 본인은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대상자 선정이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됨에 동의합니다.

2021.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사 실 확 인 서

○ 건축물 주소 :

○ 실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소유권 확인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기타()

건축물 용도	소유자	면 적(m ²)	건축연도	비 고

※ 반드시 소유권 확인 서류 첨부

○ 건축주와 신청자 관계 :

 ※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첨부

○ 건축주와 신청자 상이한 이유 :

 건축주 사망□, 상속등기과정□, 기타□(사유기재:)

상기 본인은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취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공부상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관련자(상속권자 등) : (인)

거창군수 귀하

※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모두의 철거 동의서 징구

[붙임6 서식]

포 기 서

신청내역

- 성 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상기 본인은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하고자 본 포기를 제출합니다.

포기사유 (해당란에 “V”표시)

처리 및 지붕개량 자부담금 , 사업시기,
기타 (사유 :)

2021년 월 일

위 포기자 :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 7 - 기준중위소득표]

○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088,000	106,150	92,988	107,179
3인	3,984,000	137,051	129,575	138,050
4인	4,876,000	168,195	171,434	170,536
5인	5,757,000	200,355	212,560	203,558
6인	6,629,000	228,860	248,783	233,144
7인	7,497,000	257,849	284,709	263,923
8인	8,366,000	296,707	329,659	308,297
9인	9,234,000	321,769	356,168	337,302
10인	10,103,000	354,781	393,994	380,152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제2항(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

거 창 군 수

- 1.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2.공고기간 : 2021.02.03.~ 2021.02.18.(15일간)
- 3.대상차량

순번	차량번호	차명	모델연도	운행정지사유	운행정지일자
1	대구28라4477	프린스1.8AT	1995	기타	2021. 2. 2.

4.내용

-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였으며, 해당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나.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자동차는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공고 제2021-216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공람 · 공고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2. 04.

거 창 군 수

1. 농업진흥지역 변경 계획(안)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092-2번지 일원

나. 해 제 면 적 : 농업진흥구역 9,020㎡

다. 해 제 사 유 : 거창읍 양평리 일원의 3ha이하의 자투리 농지에 대해 거창군민의 체육활동 및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 해당 공람공고는 해제(안)으로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제척될 수 있으며, 확정된 계획이 아님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1년 02월 04일 ~ 2021년 02월 18일 (14일간)

나. 열람장소 : 거창군 도시건축과, 체육시설사업소

다. 열람도서 : 정비도면 및 토지조서

라. 의견제출 :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열람장소에 비치)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안)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본 시행규칙을 제정·운영 하였으나
-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례시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4. 입법예고기간 : 2021. 02. 02. ~ 2021. 02. 22.(20일간)

5.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
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제출할 곳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경제교통과)
- 2) 전화 055-940-3352, 팩스 055-940-3349, 이메일 falsalee@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공동체담당
【☎(055)940-33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2021 ~
----------	--------

제출연월일	2021. 02. .
제 출 자	경제교통과장

1. 폐지이유

- 가.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본 시행규칙을 제정·운영 하였으나
- 나.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례시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규제혁신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거창군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2.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역예술인에 대한 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지역예술인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

- “지역예술인”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게 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6조 제④항)

-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예고기간 : 2021. 2. 3.(수) ~ 2. 15.(월)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문화관광과)

다. 전화 055-940-3412, 팩스 055-940-3409, 이메일 gomsiggi@korea.kr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55)940-3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지역예술인”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 ③. (생략)
-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 5. 생략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④ 생략